

졸업시험 시행 지침

제 정 : 2020. 6. 15.
개 정 : 2021. 2. 15.
개 정 : 2021. 8. 20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칙 제42조 및 학사내규 제73조에 규정한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졸업시험의 종류) 이 지침의 졸업시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삭제 <2021. 8. 20.>
2. 졸업논문
3. 삭제 <2021. 8. 20.>

제3조(졸업시험의 선정) ① 삭제 <2021. 8. 20.>

- ② 삭제 <2021. 8. 20.>

제4조(졸업시험 응시자격) 삭제 <개정 2021. 2. 15.>, <2021. 8. 20.>

1. 삭제 <2021. 2. 15.>
2. 삭제 <2021. 2. 15.>

제5조(졸업시험의 시행) 졸업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
1. 삭제 <2021. 8. 20.>
 - 가. 삭제 <2021. 8. 20.>
 - 나. 삭제 <2021. 8. 20.>
 - 다. 삭제 <2021. 8. 20.>
 - 라. 삭제 <2021. 8. 20.>
 - 마. 삭제 <2021. 8. 20.>
 - 바. 삭제 <2021. 8. 20.>
2. 졸업논문
 - 가. 논문 작성 계획서 제출: 논문 작성 계획서(지정양식)는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2. 15.>
 - 나. 지도교수 선정 :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는 논문 작성 계획서를 검토하여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
 - 다. 논문의 분량 :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의 분량으로 한다.
 - 라. 논문의 형식 : 제목, 목차, 본문(서론, 본론, 결론), 참고문헌 순으로 한다.
 - 마. 논문의 제출 : 논문의 제출은 최종학기 종강일 2주전까지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바. 점수산출: 관련 전공 교원 2인 이상이 평가하되, 만점은 100점으로 한다. <개정 2021. 2. 15.>

사. 통과기준: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, 평균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한다. <개정 2021. 2. 15.>

3. 삭제 <개정 2021. 8. 20.>

제6조(졸업시험 결과 제출) 졸업시험의 결과는 졸업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졸업시험 결과 조치)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만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졸업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되었을 때는 학칙에 의한 졸업을 인정하되, 그 시기는 졸업시험 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.

제8조(졸업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)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졸업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2. 15.>

제9조(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) 삭제 <2021. 8. 20.>

제10조(기타) 삭제 <2021. 8. 20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지침은 202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이전에 발생한 기수료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